

# GS 리테일

#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 3 조(권한)

- ①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542 조의 6 제 2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 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 단, 관련 법령에

의거,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,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제 2 장      구    성

### 제 4 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### 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8 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     회    의

### 제 6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, 이사회 의장,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
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**제 7 조(소집절차)**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# **제 8 조(결의방법)**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# **제 9 조(부의사항)**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**제 10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**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 11 조(보고의무)

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후 개최되는 최초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.

#### 제 12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 4 장 보 칙

#### 제 13 조(간사)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그 결의로 간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제 14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1 년 [4]월 [25]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 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1 년 [2]월 [8]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 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1 년 [3]월 [25]일부터 시행한다.